

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

"의사상자 지원제도"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**의사자(義死者)** 또는 **의상자(義傷者, 1~9급)**로 인정하고,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**지원**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

※(근거)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□ 의사상자 적용범위

- 강도·절도·폭행·납치 등의 **범죄행위를 제지**하거나 그 **범인을 체포**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 - 자동차·열차, 그 밖의 **운송수단의 사고**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 - **천재지변, 수난, 화재, 건물·축대·제방의 붕괴**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 - 천재지변, 수난, 화재, 건물·축대·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**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**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 - **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**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 - 해수욕장·하천·계곡, 그 밖의 장소에서 **물놀이 등을 하다가**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**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**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때
 -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**유사한 형태의 위해**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- ※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

□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



※ **신청시 구비서류:**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(병원급 이상 발행),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

□ 보상금

- 지급대상 및 금액
 - 의사자 유족: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'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'(2018년 215,270천원)
 - 의상자: 등급(1급~9급)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/100~5/100
- 지급순위
 - 의사자: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
 - 의상자: 의상자 본인
- 지급신청: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

□ 의료급여 * 의료급여법

- 적용대상
 - 의사자: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(배우자, 자녀, 직계존속, 형제자매)
 - ※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
 - 의상자: 1~6급 의상자 본인
- 급여자격: 1종 의료급여
- 급여개시일: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
- 신청: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신청

□ 교육보호 *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- 적용대상: 의사자의 자녀, 1~6급 의상자 및 그 자녀
- 적용범위: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금·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업품
- 신청: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
- ※ 교육사유가 발생날 또는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

□ 장제보호 *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- 적용대상: 의사자
- 신청: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

□ 취업보호

- 적용대상
 - 의사자 유족: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, 자녀, 부모, 조부모, 형제자매
 - 의상자: 1~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(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형제자매)
- 신청: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

< 공직진출지원 > * 국가공무원법, 지방공무원법

-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
- (만점의 5%) 의사자의 배우자, 자녀, 의상자(1~6급) 본인
- (만점의 3%) 의상자(1~6급)의 배우자, 자녀

□ 국립묘지 안장(이장) *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적용대상: 의사자 또는 의상자(1~3급)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
- 신청: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안장(이장)신청서 등을 제출,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(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)

□ 주택특별공급 *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국민주택, 민영주택)

- 적용대상: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
- 자격: 입주자 공모일 현재 무주택 세대(1세대 1주택 기준)